第169차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7 인	2 인
재적임원	7 인	2 인
참석임원	5 인	1 인

1. 일 시 : 2021. 6. 22.(화) 오전 10시 (회의소집 통보일 : 2021년 6월 14일)
2. 장 소 :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 국제대학교 중회의실(원격영상회의)
3. 임원 출・결 사항
   - ○ 참석 이사 (5인) : 손신영, 김방, 김홍경, 박성배, 황인하
   - ○ 참석 감사 (1인) : 임재현
   - ○ 결석 이사 (2인) : 이혜선, 황철순
   - ○ 결석 감사 (1인) : 임안식
4. 안 건
   - 가. 교원 징계의결요구(안)
   - 나. 교원 재임용(안)
   - 다. 정관 변경(안)
   - 라. 기타사항(안)
5. 회의내용

이 사 장 :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이사님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18조 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,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.

간 사 : 성원보고.

이 사 장 : 개회선언.

< 제1호 안건. 교원 징계의결요구(안) >

이 사 장 : 제1호 안건인 교원 징계의결요구(안)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.

교 무 처 장 : 의 징계신청에 대하여 회의 자료의 징계신청서와 같이 중징계로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
(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.)

이 사 장 : 이사들에게 의견제출 요청하다.
(이사들은 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다.)

<간서명>	김 방	황인하	박성배

박성배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황인하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김홍경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이 사 장 : 제1호 안건 교원 징계의결요구(안)은 교원징계처분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제대학교 을 중징계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< 제2호 안건. 교원 재임용(안) >

이 사 장 : 제2호 안건인 교원 재임용(안)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.
교 무 처 장 :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2021.8.31.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를 2021.9.1. ~ 2028.8.31.까지 7년 재임용하고, 를 2021.9.1. ~ 2026.2.28.까지 4년 6개월 정년보장 재임용하며, 을 2021.9.1. ~ 2023.2.28.까지 1년 6개월 재임용하고, 를 2021.9.1. ~ 2025.2.28.까지 3년 6개월 재임용하는 내용과, 해당 전임교원들이 연봉제를 규정한 교직원보수규정을 포함한 제반규정을 수용하는 임용계약서 체결이 전제되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다.
이 사 장 : 이사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다.
(이사들 자료를 보며 의견을 교환하다)
황인하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김홍경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김 방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이 사 장 : 제2호 안건 교원 재임용(안)은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2021.8.31.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를 2021.9.1. ~ 2028.8.31.까지 7년 재임용하고, 를 2021.9.1. ~ 2026.2.28.까지 4년 6개월 정년보장 재임용하며, 을 2021.9.1. ~ 2023.2.28.까지 1년 6개월 재임용하고, 를 2021.9.1. ~ 2025.2.28.까지 3년 6개월 재임용하는 내용과, 해당 전임교원들이 연봉제를 규정한 교직원보수규정을 포함한 제반규정을 수용하는 임용계약서 체결이 전제되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< 제3호 안건. 정관 변경(안) >

<간서명>	김 방	황인하	박성배

이 사 장 : 제3호 안건인 정관 변경(안)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. (기획처장은 신・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조항별로 설명하고 이사들은 신・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.)

김홍경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박성배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황인하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
이 사 장 : 제3호 안건인 정관 변경(안)은 [별첨]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이 사 장 :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.

이 사 일 동 : 의견 없음.

이 사 장 : 금일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로 김방 이사, 박성배 이사, 황인하 이사를 추천하다.

김 방 이사 : 동의하다.

박성배 이사 : 동의하다.

황인하 이사 : 동의하다.

이 사 장 : 제169차 이사회의 간서명자는 김방 이사, 박성배 이사, 황인하 이사로 선정하고,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한 관계로 회의록 서명과 간서명은 추후에 받는 것을 선언하다.

이 사 장 : 폐회를 선언하다. (10:26)

2021년 6월 22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이사장 손 신 영 손신영

이 사 김 방 김방

이 사 김 홍 경 김홍경

이 사 박 성 배 박성배

이 사 황 인 하 황인하

감 사 임 재 현 임재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임용) ① ~ ③ (생략) ④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하되, 부총장, 경영전략실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시홍보처장, 사무처장은 대학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⑤ ~ ⑥ (생략)	**제39조(임용)**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하되, 부총장, 경영전략실장, 기획처장, 교학처장, 산학취업처장, 입시홍보처장, 사무처장은 대학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⑤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3조(하부조직) ① 대학에는 경영전략실, 기획처, 교무처, 학생취업처, 입시홍보처, 사무처, 산학협력단을 둔다. ② 교무처장·학생취업처장·입시홍보처장·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하고, 경영전략실장·기획처장·사무처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 ~ ⑥ (생략)	**제73조(하부조직)** ① 대학에는 경영전략실, 기획처, 교학처, 산학취업처, 입시홍보처, 사무처, 산학협력단을 둔다. ② 교학처장, 산학취업처장, 입시홍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하고, 경영전략실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간서명>